

## 1. 미 농무부, 유기농제품 법규 강화 예정

- 미국 농무부 마케팅 지원청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에서는 2020년 8월 5일, 유기농 제품과 관련하여 강화된 개정안 (제안서, proposed rule)을 연방공보에 게재하였음.
  - 미국 농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기농 제품의 생산, 취급, 검증, 마케팅, 판매와 관련된 USDA 유기농 규정 집행을 강화하고, 유기농 관리 통제 시스템을 견고히 하여, USDA 유기농 라벨에 대한 소비자와 산업의 신뢰도를 증진하고 유기농 공급망의 진실성을 높이고자 함.
  - 제안된 개정안에 대하여 2020년 10월 5일까지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후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임.
  - 제안된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의 종류
    - 1) 유기농 인증을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
    - 2) 현재 USDA 유기농 인증을 받은 생산자 또는 취급자
    - 3) 현재 USDA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유기농 제품의 브로커, 거래처, 수입업자
    - 4) 비소매용 유기농 제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는 업체
    - 5)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
    - 6) USDA 유기농 규정 준수를 검증받아야 하는 유기농 인증서를 받은 업체
    - 7) USDA 인가를 받은 인증업체, 조사관, 검사관
    - 8) 미국에 유기농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 미국으로 유기농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

○ 제안된 USDA 유기농 법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USDA 관리와 통제 없이 유기농 공급망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를 감소하였음. 유기농 제품의 수입업자, 브로커, 거래처 등을 포함하여 유기농 운영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업체의 종류를 확대하였음.
- 수입되는 유기농 제품의 추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유기농 제품에 대하여 NOP Import Certificate 을 요구함.
- NOP 에서 유기농 인증기관을 감독하기 위한 권한을 명확히 하였음. 유기농 인증기관은 새로운 사무실을 개설할 경우, NOP 에 이를 보고 해야 함.
- 소매판매용 제품이 아닌 경우에도, 유기농 제품에 대해서는 유기농 라벨링을 하도록 요구함.
- 유기농 인증기관의 인증절차에 대해서, 인가받은 인증업체가 매년 사전통지 없이 진행해야 하는 실사의 최소 횟수를 규정함.
- 인증기관은 USDA Organic Integrity Database 를 통해서 표준화된 유기농 운영에 대한 증명서를 발행해야 함.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기농 운영에 대한 실사 요건을 표준화 함.
- 인증기관은 매년 유기농 운영 시스템 계획서에 대한 변경사항을 제출 해야 하며, 매년 인증절차에 대한 감사를 시행해야 함.
- 인증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의 특정 자격조건과 교육요건을 명시하였음.
- 외국 정부기관의 유기농 프로그램과의 동등성을 평가, 수립, 취소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였음
- 위반행위에 대하여 NOP 의 집행권을 강화하였음.
- 유기농 재배업자에 대한 유기농 인증 조건을 명확히 하였음.
- 복합원재료 제품에 대하여 유기농 제품의 함량 계산 방법을 명시하였음.
- 인증기관에서 기록보관의 의무, 유기농 사기 예방, 감사절차에 대하여 개선된 운영을 하도록 명시하였음.

## 2. 시사점

- 유기농 제품의 생산과 취급, 판매에 적용되는 USDA 유기농 법규가 전면 강화된 개정안이 제안 되었음.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유기농 인증에서 예외 되었던, 유기농 제품의 수입업자, 거래처, 브로커도 유기농 운영 인증을 받아야 하며,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유기농 제품이 아니더라도 유기농 라벨링을 해야 함. 또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유기농 제품에 대하여 NOP Import Certificate 이 발행되어야 하며, 기록보관 및 사기예방절차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였음. 유기농 제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유기농 제품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관련 업체들은 향후 개정안의 세부사항들을 숙지하고, 해당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이번에 연방공보에 발표된 개정안은 제안서로서, 공공 의견 수렴기간이 종료된 뒤, 수정 및 보완을 거쳐 확정안으로 발효될 예정임. 한국의 대미 유기농 수출 업체들은 개정안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주시가 필요함.

## 3. 관련 웹사이트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8/05/2020-14581/national-organic-program-strengthening-organic-enforcement>, August 5, 2020, Federal Register  
<https://www.ams.usda.gov/rules-regulations/strengthening-organic-enforcement-proposed-rule>, August 5, 2020, USDA

<저작권자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kat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FTA 이행이슈 관련 : “해당없음 “